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불법고용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협조요청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관리 지도를 위해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실태 점검을 실시(대상기간: 2013.11.1.~2013.12.31.)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외국인 불법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자진신고기간 : 2013.10.1.(화) ~ 2013.10.31.(목)

나. 자진신고 대상사업장

①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한 자

②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③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고용변동 등 신고 미이행)

다. 신고방법: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붙임의 서식에 따라 고용센터에 접수

3. 위 기간 동안 자진하여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면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의 회원사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문 1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실무관	김란	팀장	김현용	과장	전결 2013. 9. 27. 안옥자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12684 (2013. 9. 27.) 접수

우 100-220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4층 / seoul.moel.go.kr

전화번호 02-2004-7398 팩스번호 02-6915-4022 / skyrion@molab.go.kr / 비공개(6)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